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57
----------	-----

2021. 3. 23.(화)  
행정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송미애 의원 등 16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3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3월 12일

–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–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송미애 의원)

#### 가. 제안사유

○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,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  - “일제강점기”, “일제잔재물”, “친일인사”
-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  -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,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추진
  -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
- 일제잔재물의 발굴 등 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설치 (안 제6조)
  -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·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.

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,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하는 것임.
-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나 의견이 없었으며, 도지사 의견(문화예술 산업과) 의견으로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조례 제명 등 일부 문구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수정·보완 조치를 하였음.
- 이 조례안은 11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 및 상위법,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됨.

○ 그동안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 인적, 물적 역사흔적을 외면하는 실정이었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일제잔재물을 발굴하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국난극복과 애국심 고취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    론    요    지 : “생략”

6. 심    사    결    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657 호
의결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송미애 의원 등 16인
발의연월일	2021년 3월 3일

#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## (송미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7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3월 3일  
발의자 : 송미애, 임영은, 이옥규  
육미선, 오영탁, 박상돈  
심기보, 연종석, 윤남진  
이상정, 이상식, 연철홍  
장선배, 이상욱, 허창원  
김영주

### 1. 제정이유

-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교육,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  - “일제강점기”, “일제잔재물”, “친일인사”
-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  -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,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추진
  -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
- 일제잔재물의 발굴 등 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설치 (안 제6조)
  -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·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.

### 3. 조례안전문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19. 11. 8. ~ 2019. 11. 27. (19일)
-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교육,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제강점기”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(國權侵奪)이 시작된 러·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(日帝強占)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.
2. “일제잔재물”이란 제1호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,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충청북도 내 장소나 시설물
  - 나. 친일 인사의 행적과 관련한 기념물
  - 다. 그 밖에 일제에 의해 변형·훼손된 유형의 잔재 등
3. “친일인사”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, 조사하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소속된 인사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,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일제잔재물 발굴 등)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일제잔재물의 발굴 · 관리
2. 일제잔재물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 · 관리
3.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· 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 · 증언 등의 수집 · 연구 · 관리 · 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
4. 일제잔재물 현장 답사, 홍보 등 교육 · 학술 사업
5. 그 밖에 일제잔재물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(관리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, 역사교육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일제잔재물의 발굴 ·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일제잔재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일제잔재물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·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
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민간위탁)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효율적인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) 도지사는 일제잔재물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지원) 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·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이나 관련 단체·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(약칭:반민족규명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·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친일반민족행위"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·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2. 10. 22.>

1.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
2.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 ·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
3.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· 처형 ·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
4.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
5.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

6. 을사조약 ·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
7.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. 다만,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 · 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.
8.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
9.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·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
10.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(少尉)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
11. 학병 · 지원병 ·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(宣傳)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
12.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
13. 사회 ·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
14.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돋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현납한 행위
15. 판사 · 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· 고문 ·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
16.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, 현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· 고문 ·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

17.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
18.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
19.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
20.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·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
  -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

